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88 발의연월일: 2020. 9. 3.

발 의 자:이용우·유동수·오영환

김진표 • 이수진 • 이탄희

고영인 · 이형석 · 황운하

오기형 · 앙이원영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.

「형법」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

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,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·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7조의2(몰수·추징) (생 략)	제447조의2(몰수·추징) <u>①</u>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
	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
	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
	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,
	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
	가액을 추징한다.